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와 관련된 사무 등을 수행하던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15명(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7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7급 1명), 국립특수교육원의 정원 1명(교육연구사 1명) 및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명(6급 1명, 7급 2명, 9급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하면서, 이에 따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2. 9. 2. ~ 9.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제11조제3항제26호 및 제27호 중 “기본정책”을 각각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교육과정의 개발”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제12호 중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51명”을 “50명”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48”을 “633”로 하고, 특정직 계 “95”를 “85”로 하며,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93”을 “83”으로, 일반직 계 “546”을 “54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7”을 “522”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214”를 “213”으로 하고, 특정직 계 “49”를 “48”로 하며,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49”를 “48”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과 관련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3명(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9급 2명)을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8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6명)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교육부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일반직 계 “6,218”을 “6,213”으로, 일반직 3급 또는 4급 이하 “6,118”을 “6,113”으로 한다.

[별표 1의2]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0000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총 계	640
정무직 계	1
장관	1
차관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4
특정직 계	93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2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91
일반직 계	541
고위공무원단	1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	5
전문경력관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 3. (생략) 4. <u>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u> 5. ~ 36. (생략)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u>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u> 5. ~ 36. (현행과 같음)
제11조(학교혁신지원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5. (생략) 26. 유치원, 특수학교 및 초·중등학교의 <u>국가수준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27. 교과별 교육과정 <u>기본정책</u> 의 수립·시행 28. 통일대비 남북 표준 <u>교육과정의 개발</u>	제11조(학교혁신지원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5. (현행과 같음) 26. ----- ----- <u>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계획</u> ----- 27. ----- <u>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계획</u> ----- ----- 28. ----- <u>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u>

29. · 30. (생략)	29. · 30. (현행과 같음)
31. <u>국가 교육과정 심의기구의 설치·운영 및 포럼의 운영</u>	<u><삭 제></u>
31의2. ~ 48. (생략)	31의2. ~ 48. (현행과 같음)
제12조(교육복지정책국) ① · ② (생략)	제12조(교육복지정책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유치원 <u>교육과정</u> 및 교원 관련 제도 개선	12. ---- <u>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u> ----- --
13. ~ 16. (생략)	13. ~ 16. (현행과 같음)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u>51명</u> 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의 3분	② ----- ----- --. ----- ----- ----- ----- ----- ----- ----- <u>50명</u> 을----- -----

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 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 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 략)	----- ----- ----- ----- -----. ③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감
총계	<u>647</u>	<u>632</u>	-15
·	·	·	
·	·	·	
특정직 계	<u>95</u>	<u>85</u>	-10
·	·	·	
장학관 · 교육연구관 또는 4급 일반직 이하	<u>93</u>	<u>83</u>	-10
일반직 계	<u>546</u>	<u>541</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27</u>	<u>522</u>	-5
·	·	·	

[별표 2]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14</u>	<u>213</u>	-1
•	•	•	
•	•	•	
특정직 계	<u>49</u>	<u>48</u>	-1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이하	<u>49</u>	<u>48</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3